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
2018.3.15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2018. 3. 15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세부 추진내용	2
1.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 합리화	2
2. CEO 선임투명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5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8
4. 감사업무 실효성 제고	8
5. 감사위원 선임요건 개선	10
6.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 및 투명성 강화	11
7. 임직원 보수공시 강화 및 내실화	12
8. 기타 개정사항	14
III. 향후 추진일정	16

1. 추진 배경

-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규율의 필요성이 큼

<그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개선 현황>

- ①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기준 도입,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도입('00.1월)
- ② 사외이사 모범규준 및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마련('10.1월)
- ③ 쉐 금융권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 마련('14.11월)
-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15.7월) 및 시행('16.8월)

- 그러나, 그간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

⇒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권의 임원 선출절차 투명화 및 CEO 권한견제 등 지배구조 운영개선 필요성 권고*('17.12월)

- * ①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 제한 및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견제장치 마련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다양화 및 근로자의 이사추천권 강화 검토
- ③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통해 지배구조 결정시 주주의 역할 확대

⇒ 금감원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실태점검('18.1~2월)에서도 최근 지적되고 있는 지배구조 운영 관련 문제점이 현실로 확인*

- * ① 대표이사의 사외이사 선임과정 참여(임원후보추천위 위원)
- ② 성과보수 이연지급분에 대한 환수규정 부재 등 투명성 · 공정성 부족

- 소유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 금융회사의 경영을 실제로 지배하는 자를 심사하지 못하고 심사실익이 없는 자를 심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 노출

* 심사대상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으로 한정

◇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 주체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주주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II. 세부 추진내용

1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 합리화 [法 § 32, 令 § 27 개정]

가. 개정 필요성

□ 현행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는 심사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여 당초 도입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 * ①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
- ②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찾는 방식으로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나올 때까지 선정

○ 금융회사에 대한 실제 지배력과 무관하게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이 나올 때까지 모회사를 타고 올라가 개인 1인을 심사

(i) 모회사를 여러단계 타고 올라가 금융회사 지배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발생

(ii) 개인 1인과 금융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다른 경우* 해당 주주를 심사할 수 없음

- * (예) 명목상의 최다출자자 1인을 대신하여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금융회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인 경우

⇒ **심사실익이 없는 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회사에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정 필요**

나. 개정 내용

(1)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개편

①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전체**”^①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②로 확대

- ① 최다출자자 1인 +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최다출자자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자도 포함)
- ② 주요주주 중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 연합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 선임

- 최다출자자 뿐만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인 다른 최대주주들도 최다출자자와 함께 지배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므로 심사대상에 포함
- ⇒ **현행 지배구조법 하에서 발생하는 심사의 사각지대 해소**
- 경영 관여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나 단순 주요주주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참고 : 현행법률 및 주요개정안의 대주주 적격성심사 대상 비교>

구분		현행법률	정부개정(안)
최대주주	최다출자자 1인	○	○
	최다출자자(법인)의 대표자 및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	X	○
	최다출자자 1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X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X	X
주요주주	사실상 영향력 행사 주주	X	○
	단순 10% 초과 보유주주	X	X

- ② **심사대상 대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포괄위임(상법 §368②)한 경우, 대리인도 심사대상에 포함**
 -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심사대상 대주주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음을 감안
- ③ **펀드처럼 명목상 최대주주와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운용사)가 다른 경우 실질을 반영하여 운용사를 심사**

(2)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강화

-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시행령 규정사항)을 받은 경우**”를 추가
 - * (현행)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 →
 - (개선)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 특경가법 위반
- **특경가법에 해당되는 죄는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중범죄로서 동법 위반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

- 배임죄(특경가법 §3)의 경우도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포함

* 대판 2002도4229 : 배임죄는 단순한 경영판단상 과실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의도적 행위에만 인정

- 다만, 타금융업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결격사유를 “벌금형 이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금고형 이상”으로 규정

* 저축은행법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만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

(3) 의결권 제한명령 부과대상 명확화

- 복수의 최대주주 중 결격사유가 없는 최대주주의 의결권에는 영향이 없음

- 결격사유가 발생한 해당 최대주주의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

(4) 법인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명령 부과기준 신설

- 심사대상에 개인 외에 법인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부적격 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중범죄 기준을 신설

- 개인 심사대상과의 형평성, 타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억원* 이상’을 의결권 제한명령 부과대상으로 설정

* 1억원은 다수 법률에서 법정최고형이며,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등 위반 빈도가 높고 형량이 높은 법에서는 중범죄와 경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치

(5)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 부과 근거 신설

- 의결권 제한명령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법 및 저축은행법* 사례를 준용하여 근거 마련

* 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유지요건 충족명령 부과(10% 초과 의결권 자동정지) → 동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주식처분명령 부과 가능

2 CEO 선임투명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法 §12, 令 §13 등 개정)

가. 개정 필요성

① CEO 승계 프로그램의 불투명성 및 형식화

-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CEO 승계 프로그램 마련이 의무화되었으나 상당수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음

(i) CEO 후보자군이 아예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관리

(ii) CEO 승계 프로그램 개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CEO 유고시 승계절차가 가동되지 못하고 경영공백 초래

② CEO 후보 선출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역할 미흡

- 사외이사가 최고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CEO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 제기

③ CEO 후보 선출 과정에서 주주의 역할 미약

- 국내 금융지주 및 은행 주요주주 대부분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최소한의 재무성과만 보장되면 이사회에 결정에 순응

< 참고 : 해외사례(미국)>

◇ 미국 소액주주운동단체인 LiUNA는 CEO 승계계획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대한 주주제안 가이드라인* 제정

* ① 이사회는 매년 CEO 승계계획을 검토 ② 이사회는 장기경영전략을 고려하여 CEO 자격요건 수립 ③ 이사회는 내부 CEO 후보를 물색하고 역량을 개발

④ CEO의 적극적 자질에 대한 검증 메커니즘 미약

-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의 소극적 결격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 능력이나 경험과 같은 적극적 자격요건은 미규정(사외이사 제외)

* 범죄·행정제재 경력자, 채무불이행·파산 등 신용불량자, 부실금융회사 유관자, 심신미약자 등이 아닐 것

- 임원의 자질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방법이 없어 건전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격자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나. 개정 내용

(1) CEO 자격기준 및 승계프로그램 내실화 (法 제5조, 승 제13조)

◇ 금융행정혁신 보고서(17.12.20) 74p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출제도의 개선”, 75p “임추위의 이사 추천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추천 인재 포함” 반영

- (적극적 자격요건) 최고경영자가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법률상 의무화
 - 법상 요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금융회사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여 공시·운영하도록 함
- (CEO 후보군관리) 후보자군이 투명한 평가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련사항 추가
 - CEO 후보자군 선정을 위한 자체 평가기준
 - 연도별 후보자군 적정성 평가 및 후보군 관리내역의 주주에 대한 보고
- (CEO 승계절차 내실화) CEO의 임기만료, 유고 등 상황에 따른 승계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토록 의무화

<참고 : 해외 사례>

- ◇ CITI Group : 매년 경영진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해 내부후보군을 선정하고, 외부전문기관 협조로 외부후보군도 선정
- ◇ BOA : 인사부서에서 CEO 후보자 양성 프로그램을 사전에 운영하고, 프로그램에 따른 잠재후보자 평가결과를 토대로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

(2)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 제고 (法 제12조, 승 제13조)

- 이사 개인의 역량, 자질 뿐 아니라 이사회가 총체적으로 금융회사 경영에 적합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 임추위가 이사후보 추천시 정합성 평가(Board Skills Matrix)를 수행토록 의무화

<참고 : 해외 사례>

- ◇ 싱가포르(모범규준) : 이사회는 회계나 금융, 경영경험, 산업, 기획, 소비자 등에 대한 핵심역량과 지식을 갖춘 자들로 구성되어야 함
- ◇ 영국(모범규준) : 임추위는 신규임원 추천시 이사회가 기술과 경험, 독립성, 지식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함

(3)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 (法 제33조)

◇ 금융행정혁신 보고서(17.12.20) 75p “주주제안권 활성화하여 주주가 추천한 CEO 및 사외이사 후보 포함” 반영

□ 소수주주권 중 경영권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작으면서 주주의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

○ 현행 ‘의결권 0.1% 이상’을 ‘의결권 0.1% 이상 또는 직전분기말 기준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

* 상법상(시행령 §32)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1%→0.5%) 적용대상 상장회사 기준이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인 점을 감안

<참고 : 해외 사례>

◇ 미국(SEC규정) : 의결권 있는 주식 1% 이상 또는 시가 2천불 이상 보유
(단, 주주제안에 따른 의결사항은 회사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않음)

◇ 일본(회사법) : 의결권 있는 주식 1% 이상 또는 300주 이상 보유

(4)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法 제6조·제12조, 승 제8조·제13조)

① CEO 선출 등 금융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

○ 외부평가의 객관성, 독립성 보장을 위해 외부평가수행기관의 구체적 자격요건도 마련

② 사외이사 후보자군 선정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 Pool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 마련 의무화

③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

* 다만, 사외이사의 역할미흡에 따른 일괄교체(예:14년 KB사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일괄교체가 가능하도록 예외사유 명기

○ 연도별 사외이사 교체비율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배구조내부규범을 통해 순차선임 방법을 공시하도록 함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法 § 17 개정]

◇ 금융행정혁신 보고서(17.12.20) 77p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배제” 반영

가. 개정 필요성

- 금융회사의 CEO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출에 관여하는 사례 존재
 - CEO를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CEO 본인이 추천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으며,
 - 대표이사의 이해를 반영하는 인물이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로 선출되어 거수기 역할을 할 우려가 있는 바 개선 필요

나. 개정 내용

-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참여를 금지
- 임추위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

<참고 : 해외사례>

◇ OECD 지배구조내부규범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Nomination Committee)에서 대표이사 참여배제를 권고

4 감사업무 실효성 제고 [법 § 20, 승 § 13 등 개정]

가. 개정 필요성

-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내부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여전히 감사업무 내실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상존한다는 지적

* 소규모 금융회사(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금투·여전·보험, 자산총액 7천억 미만 저축은행)는 상근감사 선임 가능

① 감사위원 선임 과정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불충분

- 대표이사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논의를 주도하는 경우 경영진의 기호에 부합하는 감사위원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

② 내부감사 조직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불충분

- 법상 내부감사 조직의 보고체계가 감사위원회 직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내부감사 결과 등을 경영진에 先보고* 하는 사례 존재

* 감사결과 경영진 사전보고 현황(77개社 조사) : 종합감사(15개社), 특별감사(21개社)

- 감사업무 담당직원의 장기근속이 보장되지 않고 인사권*이 CEO에게 있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업무수행 곤란

* 감사지원조직에 대한 인사권 현황(77개사 조사) : CEO(74개사), 감사위원회(3개사)

나. 개정 내용

(1) 감사업무의 독립성 보장 (法 § 20, 令 § 13)

◇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77p “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충실히 이행” 반영

-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 삽입

<참조 조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감사조직의 독립적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지배구조내부규범 기재사항으로 의무화하여 관련 정책을 시장에 공시하도록 함

- *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에 대한 업무관할권 보장
- ② 감사담당 직원의 최소근속기간 및 신분 보장
- ③ 감사담당 직원의 감사위원회 보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방지
- ④ 감사담당 부서에 대한 인사시 감사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참조 조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관계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2) 대규모 금융회사에 대하여 내부감사책임자 선임 의무화(法 제20조)

□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내부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

* 감사위원회 설치대상 금융회사(은행, 지주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투·보험·여전사, 자산총액 7천억 이상 저축은행)로 한정

○ 일상적 감사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내부감사책임자가 감사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함

□ 내부감사 책임자의 선임 방법(감사위원회 의결), 임기(최소 2년 이상)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준하여 보장

5 감사위원의 선임요건 개선 (法 §19 개정)

가. 개정 필요성

□ 현재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및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상임감사위원)은 연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장기간 연임이 가능

○ 경영진의 직무수행을 감시하는 감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경영진과 유착관계를 형성할 우려

□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최소임기 또한 보장되고 있지 않아 감사위원이 임기연장을 위해 경영진에 순응하게 될 우려도 존재

나. 개정 방향

◇ 금융행정혁신 보고서(17.12.20) 77p “감사위원의 자격 제한(예 :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반영

①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동일회사 재임기간 제한

○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동일하게 동일금융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함

②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인 “직무 전문성 요건*” 준용

*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지배구조법 §6③)

-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이 금융 무경력자의 취업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를 방지하고 감사업무의 전문성 강화

③ 감사위원의 임기를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

-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소임기 2년을 보장하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사례를 준용

④ 감사위원의 이사회내 타위원회 겸직 제한

- 감사위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타위원회 겸직을 제한

6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 및 투명성 강화

[法 §24, §27, §30 개정]

가. 개정 필요성

-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 의무 소홀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실 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어려움

나. 개정 내용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에게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부과

* 내부통제기준 관련 : CEO, 준법감시인

위험관리기준 관련 : CEO, 위험관리책임자,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

** ①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②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총실한 점검 ③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상응하는 내부징계 등 조치방안 마련 등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 실태가 미흡하여 소비자 피해 및 금융시장 건전성 저해우려가 큰 경우 금융회사 및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7 금융회사 임직원 보수공시 강화 및 내실화 (法 §22, 승 §17 등 개정)

가. 개정 필요성

- 금융회사 임원의 높은 보수 수준에 대해 성과 대비 과도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지속 제기

⇒ 보수지급 내역에 대한 공시를 통해 임원 보수의 정당성, 투명성 제고 필요

- 과도한 단기성과급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보수 이연 제도가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외에도 대출, 지급보증, 보험계약 인수, 카드발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회사의 실적과 연동한 성과급을 받는 직원에게도 적용

- 회사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공시를 통해 평가받도록 할 필요

나. 개정 방향

(1) 고액연봉자에 대한 개별보수공시 의무화 (法 제22조)

-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 보수총액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

* <예시> ① 자본시장법(§159)상 개별보수 공시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임원
 - 보수총액 상위 5인으로서 5억원 이상인 임직원
 ②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인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

(2) 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심의(Say on Pay) 의무화 (法 제22조)

□ 대형 상장금융회사*의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등기임원 선임시를 포함하여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 의무화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적용

**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보수총액의 산출기준, 보수의 지급방식

○ 등기임원을 주총에서 선임할 때 임기동안의 총 보상계획에 대하여 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Say-on-Pay를 의무화

- 임기개시 이후에도 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에 중대한 수정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Say-on-Pay를 실시하도록 유도

○ 다만, 투표결과에 대한 구속력은 미부과 (권고성 투표로 운영)

<참고 : Say-on-Pay 관련 해외사례 (미국/영국) >

① 미국 Dodd-Frank Act : 상장법인은 최소 3년에 1회 이상 경영진의 개별 보수 (Compensation of Executives)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심의(non-binding)를 받아야 함

② 영국 Company Act : 상장법인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에 대한 보수지급 현황(Remuneration Report)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심의(non-binding)를 받아야 함

(3)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보수독립성 의무화 (法 제22조)

□ 사외이사와 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해서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 현행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체계와 동일

○ 사외이사가 회사의 재무성과와 연동한 보수를 받을 경우, 경영진과 유인체계가 동일해져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고려

※ 영국 지배구조모범규준은 사외이사의 보수체계에서 스톡옵션이나 성과연동 보수를 배제하도록 권고

(4)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의 자율성 확대 (승 제17조)

□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이 되는 직원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금융회사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 직원의 선정기준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8 기타 개정사항

가. 대주주 변경 사후보고 대상 조정 [法 §31, §43 令 §26 개정]

- 전문사모집합투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대주주 변경 보고제도 신설

* 상기 2개 등록업단위는 지배구조법 제정 이후 신설되어 지배구조법상에 대주주 변경 보고의무가 미반영되어 있음

- 다른 등록업과 동일하게 대주주 변경 후 2주 이내에 변경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보고조항 마련

나.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무 완화 [法 §8, 令 §9 개정]

- (추진배경) 현행법률은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위험관리, 재무관리, 전략기획 분야의 모든 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 초래
- (추진내용)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각 분야의 “최상위 (Chief)” 업무집행책임자 1인만을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임면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범위를 규정하는 기존 시행령 규정(令 §9)은 삭제

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겸직 규제 완화 [法 §10, 令 §11 개정]

- (추진배경) 금융지주그룹 내의 겸직의 경우 통합적 조직운영 필요성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완화된 겸직규제체계를 적용하나,

-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집합투자·변액보험) 겸직의 경우 일반 금융회사 간의 겸직규제보다 더욱 엄격*해 규제역전현상 발생

* 일반 금융회사와 그 자회사 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겸직승인을 통해 겸직(상근-비상근)이 가능한 반면, 금융지주 자회사 간에는 겸직이 금지

- ⇒ 과거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겸직규제를 별도로 규율함에 따라 발생했던 법기술적 문제로 규제취지에 맞게 조정 필요

- (개정방향)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도 일반 금융회사 간과 마찬가지로 집합투자·변액보험 업무의 겸직을 허용(금융위 승인요)
- 겸직 형태는 다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상근-비상근만 허용 (→금융투자업 수행에 대한 겸직규제를 자본시장법으로 일원화)

<참고 : 겸직규제 완화시 금융지주 자회사간 겸직허용범위 변화>

업무영역	기존 규정	개정 후
집합투자업무 (변액보험 포함)	겸직 금지	집합투자업무 수행 임직원 간 겸직은 허용 (상근-비상근, 금융위 승인요)
신탁업무	겸직 가능 (금융위 승인요)	겸직 가능 (상근-비상근, 금융위 승인요)
기타 금융투자업무	겸직 가능 (금융위 보고요)	겸직 가능 (상근-비상근, 금융위 보고요)

라. 刑의 선고와 관련한 임원 결격요건 조정 (法 §5 개정)

- (추진배경) 범위반으로 형벌을 선고받은 자 간에 형벌의 종류에 따른 임원의 결격기간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는 측면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결격기간*이 보다 경미한 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보다 짧아지는 문제 발생

- * <사례> ①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향후 5년 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② 징역형의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 유예기간(3년)이 끝남과 동시에 결격사유가 해소

- (개정방향) 발생 가능한 形의 선고의 종류별로 그 경중을 감안하여 결격요건 기간을 형평성 있게 구분하도록 법령 개정

형의 종류	현행 임원자격 결격기간	개정안
금융법 위반 벌금형	형집행 종료 후 5년	벌금형 선고 후 5년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	선고유예기간 종료시까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집행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집행유예기간 종료후 3년
금고 이상 실형	형집행 종료 후 5년	현행과 동일

Ⅲ. 향후 추진일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입법예고
(‘18.3.15.~4.24.)
 - * 법률개정 없이도 추진 가능한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사항의 경우 법률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
-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규제위 및 법제처 심사 (‘18.4~5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18.5~6월)
-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완료 (‘18.6월)
-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시 후속조치로 법개정과 연계된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입법절차를 추가로 추진 (‘19년중)

참고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과제명	주요 내용	추진계획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 합리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강화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 (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의결권 제한명령 부과 주식범위 조정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
	의결권 제한명령 불이행시 처분명령 부과근거 신설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
	법인 주주에 대한 의결권제한명령 부과기준 마련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
CEO 선임투명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CEO에 대한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
	CEO 후보자군 관리 및 CEO 승계절차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내실화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 (18.3월 입법예고)
	이사 선임시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 평가 수행 의무화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
	사외이사 외부평가 의무화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 (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시 외부전문가 추천 인재 pool 반영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 (18.3월 입법예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 원칙화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	
내부감사업무 실효성 제고	감사업무 독립성 보장의무 명문화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
	내부감사책임자 선임 의무화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
	내부감사조직 독립성 위한 내규 마련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 (18.3월 입법예고)
감사위원 선임요건 개선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동일회사 재임기간 제한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전문성 요건 추가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
	감사위원의 최소임기(2년) 보장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

과제명	주요 내용	추진계획
	감사위원의 이사회내 타업무 겸직 제한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
금융권 임직원 보수공시 강화 및 내실화	고액연봉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강화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 (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등기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투표 의무화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 (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보수독립성 의무화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
	성과보수 이연지급자 선정 자율성 확대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 (18.3월 입법예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 및 투명성 강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 미흡시 관리임원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
기 타	대주주 변경 사후보고 대상 확대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 (법개정 완료후 입법예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무 완화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
	금융지주 자회사간 겸직규제 완화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
	形의 선고와 관련한 임원 결격요건 조정	지배구조법 개정 (18.3월 입법예고)